

<부산·경남 지역순회 정보인권 교육 및 토론회>

# 부산·경남 지역순회 정보인권 교육 및 토론회

- 일정 : 2011년 11월 28일
- 장소 : 부산광역시청 국제대회의실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5:00 ~ 15:10	[인사말]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개회 및 토론자 소개] 강석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15:10 ~ 16:10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16:15 ~ 17:00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7:05 ~ 18:00	[정보인권 관련 토론]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배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한영 (6·15남북선언실천)

# 목 차

## ❖ 발제문

-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 1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 29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토론문

- 정보인권 관련 토론 ..... 33  
김배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한영 (6·15남북선언실천)

발제문



##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박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박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1.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1) 정보사회와 인권

인터넷의 보편화와 고도의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도화된 정보기술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고, 감시와 통제가 발달했으며, 정보접근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요구, 공항 전신스캐너 설치, CCTV와 인터넷 검열,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글 삭제, 세대·지역간 정보격차, 웹접근성 취약, 저작권 삼진아웃제, 딸아이의 연예인 따라부르기 동영상 저작권 침해소송 등 정보사회에서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에 정보인권 관련 상담 및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일주일 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을지부터 한달 뒤 오전 10시에 어디에 있을지까지 남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만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스마트폰, CCTV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기기들은 축적한 개인의 행적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금도 특정인의 미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지은이는 이런 체제가 ‘빅 브러더’ 사회가 될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래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미래행동을 들여다보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다.(책과 삶 2010년 7월 23일자 기사 “나는 네가 할 일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

## 2) 정보인권의 개념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이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유통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정보의 자유(정보소통의 권리)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정보유통의 통제에 관한 권리들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정보인권의 유형

정보인권은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정보의 자유에서 파생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이 있으며,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그 해당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 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있다.

## 2. 정보인권 유형별 국제규약과 법률

### 1) 정보프라이버시권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준으로는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EU 개인정보보호지침, APEC 프라이버시원칙, ILO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실행 규약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수집제한의 원칙·정확성 확보의 원칙·목적명시의 원칙·이용제한의 원칙·안전성 확보의 원칙·공개의 원칙·개인참여의 원칙·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국내 관련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이 있으며, 기본이 되는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으로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 자율규제 혹은 상호적 규제, 사전국가통제의 부재,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참여를 억제하는 장애의 제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익명성 등이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은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에 관한 규정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서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정보자유법」,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하여 알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률로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규정은 웹접근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웹표준화와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계층 접근성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이 있으며, 미국의 국제표준화기구(W3C)의 웹 접근성 지침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영국, 호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저소득층·농어민·장애인·노령자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

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 4) 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와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화, 예술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헌장은 문화의 폭넓은 확산은 모든 국가가 상호 부조와 배려의 정신으로 준수할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다.

### 3. 정보인권 관련 위원회 권고 및 법원 판결

#### 1) 정보프라이버시권

##### 1.1 CCTV 촬영에 의한 인권 침해(화상정보)

사무실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CCTV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9.8.24.자 09진인545)



## 1.2 전신스캐너에 의한 인권 침해(신체정보)

### 사례:

국토해양부의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반면에 전신검색장비의 설치 및 운용으로 기존의 검색장비로 탐색할 수 없는 물질을 검색할 수는 있겠으나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도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10.6.10.자)

## 1.3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개인정보)

### 사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티 국민연금 활동을 벌여온 네티즌들과 언론 매체 등에서 국민연금을 비판한 사람들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다수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및 특정 가입자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6.2.27자 05진인1055)

## 1.4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생체정보)

### 사례: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 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국립대학교 총장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5.7.25자 04진인3372)

## 1.5 사업장 전자감시에 의한 인권침해(전자감시)

사례: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과 개별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전자감시가 허용되는 명확한 범위, 전자감시의 도입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장치,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내용, 사용자의 전자감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대한 의견표명

사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려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형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종국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인권위 2009.2.5.자)

## 2.2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개선 권고

### 사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허용되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도 계속 유포시킬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계속이 몇 회를 말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으며,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웃음을 이끌어 내는 표현형식인 패러디물을 창작하여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금지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커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2009.10.29.자)

## 2.3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 사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본 규정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본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출을 결정하였다.(인권위 2009.10.29.자)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터넷논객인 일명 ‘미네르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토론방에 게시한 글이 허위통신이라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사안에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9.4.20. 선고 2009고단304판결)

## 2.4 미니홈피에 올린 의견 때문에 퇴학처분

사례:

상담: OO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싸이월드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좌파성향이라며 2008년 8월 퇴교조치를 당했습니다. 퇴교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2주 만에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교조치 후 OO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입학 불허 조치를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을 남기고 퇴교를 당해, 다음주 월요일에 일반 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지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답변: 이에 위원회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2.5 블로그 글에 대한 삭제 요청

사례:

상담: 평소 병역비리에 대한 분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보충역 4급 사유가 없는데 사위행위 등을 동원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부류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해당 글에 소개된 사위행위(이미 언론을 통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법)를 통한 병역감면 수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글의 삭제요청 공문을 포털 측에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제 글이 불법적인 글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목이 적절치 않으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제 글을 보고 병역기피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군대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제목이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겁먹은 포털 측은 병무청 요구를 들어주면 복원시켜 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셈입니다.

관련 인권위 결정: 정보통신 심의제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함께 작용하여 사실상 검열로서의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9.30. 결정)

### 3) 정보접근권

#### 3.1 사내게시판 이용 차별

사례:

한국방송공사 관현악단원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달리 사내 인트라넷의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내 인트라넷은 전자결재부터 게시판까지 모든 정보를 집약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많은 직원들이 자유 의견을 수시로 게시하고, 원활하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면서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6.3. 08진차564)

#### 3.2 정보 공개거부에 의한 알권리 침해

사례: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OO군수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인 행정장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5.5.9.자 05진인191)

### 3.3 정보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 사례: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을 자체 폐기하고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OO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O대학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잡이 대책 수립 및 직무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2008.7.17.자 07진인4983)

### 3.4 웹 접근성

#### 사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웹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2009.11.) 결과 여전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맹 시각장애인들의 웹 사이트 접근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정보문화향유권

### 4.1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관한 프랑스의 위헌소송

사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의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정에 대하여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 기본권의 범주에 인터넷 접속권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형사처벌의 성격을 띤 제재를 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삼진아웃제는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 4.2 딸아이의 유명 가수 따라부르기 영상 게시물 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

다섯 살 된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UCC 형태의 동영상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포털사이트는 이 사건 게시물 전체를 임시 게시중단 처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게시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의 범주에 포함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만을 주장하면서 게시물을 중단 처리되게 함으로써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2.18. 2009가합18800)

#### 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목록 (2001~현재:2011.11.15.)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1	02.06.10.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사법경찰관의 최장 12시간 긴급감청부분 삭제
2	02.07.30.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따른 정책권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사유 재검토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3	02.08.1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정보통신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 전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 내용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 권고
4	02.09.25.	보험업법개정법률(안)제165조에 대한 의견 제출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삭제 요청
5	03.03.10.	경찰청 주민별 얼굴사진 자료 수신에 관한 의견 표명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6	03.03.1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7	03.05.12.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NEIS의 개발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 교원인사기록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
8	03.10.22.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사무처리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5개 항목(신체사항 중 혈액형, 가족사항 중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표명
9	03.10.22.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빈약하므로 입법 반대
10	03.11.1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보장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
11	04.02.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인터넷 언론 선거계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12	04.04.19.	공공기관의 방법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방법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법CCTV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출 것을 권고
13	04.07.05.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정안 제2조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직무를 희망하는 자”를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호의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것과 제정안 제12조 제1항 인물정보의 타 기관 제공 시 정보제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활용 후 폐기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14	04.08.23.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인’ 태생적 문제점,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각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사상과 양심, 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 위배 등 인권 침해 소지, 현행 형법으로의 대체 가능성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외의 폐지 여론 등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
15	04.09.06.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제11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대상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하여 실시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제11조제2항의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의견 표명
16	04.10.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등에 대한 의견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3 및 제25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를 위원회의 NEIS 관련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 작성, 관리에 대한 사전고지 조항 도입 등
17	05.02.14.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국가안보 상 필요한 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배후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 신원조사 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8	05.02.28.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안에대한 의견	세부정보등록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침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청소년과 그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는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개정안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규정은 범죄의 경중에 대한 차이, 제한되는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의견 표명
19	05.03.25.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표명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권고
20	05.08.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검토의견 표명	경미한 행정의무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단, 법률안의 내용 중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 과태료 미납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명령을 가능토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있어, 동 법률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21	06.04.10.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음.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07.01.0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성폭력의 객체에 남자아동을 포함하고, 유사강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간행위를 규정하며,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적 열람제도를 도입하는 전부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고, 법관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 금지 조항 및 유전자정보등록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함
23	07.02.15.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함
24	07.04.12.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권정보를 구체화하고, 여권발급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 시 지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 최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집한 생체정보는 저장관리 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여권법 시행령 상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하며, 여권발급관련 여권 기재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여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25	07.07.19.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환경지킴이 위치정보 수집·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단계에서의 보완, 위치정보 사용·처리의 관리 및 보안조치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및 열람·정정요구 등의 권리보장 조치 마련을 권고함
26	07.08.16.	징병검사 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복무기관에서는 병역법상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병종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받으면 족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질병이나 수행사실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수집정보의 관리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표명
27	07.09.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등에 대한 과제자료,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신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28	07.11.01.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견 표명	행정정보의 이용기관 중 금융기관 배제, 이용기관의 범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정보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절차,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9	07.11.12.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
30	07.12.1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의 삭제하도록 의견표명
31	08.04.03.	국방자격법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방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국방자격 정보체계의 운영에 있어 국방자격취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32	08.05.15.	카이어링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체납사실이 기재된 비닐류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의 카이어링제도는 행정법상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차량소유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비닐류스티커의 임의적 제거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33	08.07.31.	국가정보원의 신원진술서 서식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정보원장에게 약식 신원진술서 항목 중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및 직위’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34	08.11.0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사업에 대한 의견표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사업은 치매노인의 각종 안전사고 및 실종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제도임이 인정되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의 노출시 범죄의 대상이 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 하에 개인신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 하거나 총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2008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합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35	08.12.24.	국세청의 개인정보이용	병무청의 현역병 복무기록(복무기간, 성명, 주민번호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호)은 개인정보이므로, 공익상 정보제공 요청이라도 대상범위를 최대한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09.01.22.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한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영업의 자유,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위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
37	09.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하고, 도입하더라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38	09.02.05.	형법(장운석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통망법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 사이버모욕죄도 국회 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정통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함.
39	09.03.19.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질병관리본부장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표명
40	09.06.04.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의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대상 치매노인의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41	09.06.0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할 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공간의 특성, 그리고 본 규정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위축 효과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42	09.08.27.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 의견표명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다 심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개인정보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서울시 노숙인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표명
43	09.10.29.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
44	09.11.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公安사범에 대한 정의규정 및 법무부장관에게 公安사범관련자료를 별도로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하는 바 그 표현이 막연하고 중요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과잉 제한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명
45	09.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부안)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표명	현행 법에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기준(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면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서 "유형별", "10만 명 이상"을 삭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46	09.12.0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정부입법발의) 중 CCTV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4조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항의 광범위한 위임 규정은 CCTV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제7항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방범용 CCTV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 CCTV의 설치·운영이 보편화되면서 사생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통합관리 시 사후적 관리보다 등록제·허가제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7	09.12.24.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표명건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흡결하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 해훈안과 변재일안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이 된다고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하더라도 직무관련 개인소송 저항권 규정과 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8	10.03.25.	병적 증명서 발급시 과거의 병역면탈 범죄사실의 기재, 발급 방안에 대한 의견	병무청의 병역면탈 범죄 방지를 위해서 병적증명서에 병역법 위반 사실의 기재, 발급하는 방안의 인권침해 여부 질의에 대하여 동 방안은 공개인의 일반적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49	10.05.1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위 규정들이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50	10.06.10.	국내공항 전신검색장치 설치 금지 권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
51	10.06.17.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가. 공개수배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과,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수배자의 사진을 피의자 검거 후 즉시 삭제할 것과,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수배자의 사진을 복제·유포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할 것과, 라. 공개수배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
52	10.08.19.	형사소송법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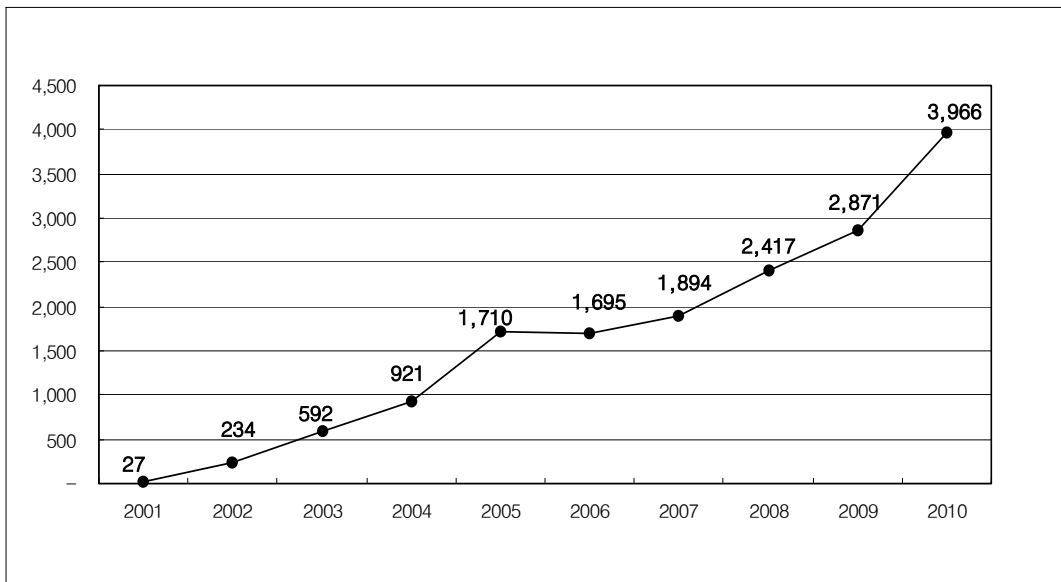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 규정 마련,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도의 획득을 피할 것,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할 것 등을 의견표명
53	10.09.0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54	10.9.30.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게시자에 대한 사전 고지,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심의대상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표현게시물 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검열의 위험성이 있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
55	10.11.25.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운영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점검계획을 포함한 공중위생시설의 CCTV 설치·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목욕장내 시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하며, 중요 부위나 전부 노출 장소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행안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사전등록제와 같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 설치를 금지하며, 보안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
56	10.12.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8806호 법률안에서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및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이 자료 첨부 규정은 당사자와 가족 및 인근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음 고지정보에 있어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공개정보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57	11.04.28.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관 련의견표명	QRCode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확인하는 위치정보사용에 대한 것은 전자감시에 의한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움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p>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동의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가서비스수급권자의 RFID태그 부착시에는 수급권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부동의 하는 의사를 표시할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것</p> <p>태그카드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요양보호사의 개인휴대폰을 강제하는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방법을 고려할 것을 의견표명함.</p>
58	11.07.14.	시립도서관 열람실내 CCTV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p>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된 열람실과 그렇지 않은 열람실을 분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p> <p>CCTV로 인하여 열람실을 사용하는 동안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및 지속적 감시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CCTV 이외의 대체수단을 통하여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p>
59	11.07.25.	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 건(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p>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등의 사건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함.</p>
60	11.10.27.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권고	<p>(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p>
61	11.10.27.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p>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학생들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p>

## 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 및 상담사례 통계 (2001~현재:2011.11.8)

연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2001	19	8	-	-	27
2002	113	115	6	-	234
2003	140	338	79	35	592
2004	208	405	220	88	921
2005	331	606	677	96	1,710
2006	252	583	774	86	1,695
2007	464	604	757	69	1,894
2008	504	928	879	106	2,417
2009	629	1,279	902	61	2,871
2010	922	1,893	1,095	56	3,966
합계	3,582	6,759	5,389	597	16,327



- 2010년 기준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 및 상담사례는 16,327건
-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 및 상담사례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 1,695건에서 2007년 1,894건, 2007년 2,471건, 2008년 2,871건, 2009년 2,871건, 2010년 3,966건 접수
- 2010년에 위원회는 진정 922건, 상담 1,893건, 민원 및 안내는 1,151건이 접수됨
- 2010년에 2009년에 비하여 진정 296건(47%), 상담 614건(48%), 민원 및 안내는 193(26%)로 증가
-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 및 상담은 2005년 937건에 비하여 2010년 2,815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6. 국가인권위원회 CCTV관련 진정 및 상담사례 통계 (2001~현재:2011.11.8)

### 1) CCTV 관련 인권침해 통계 분석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2009~2011 인권증진행동계획> 중 주요 과제로 정보인권 보호·증진 설정
-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의견표명
- 2010년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 2010년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선권고
- 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CCTV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속적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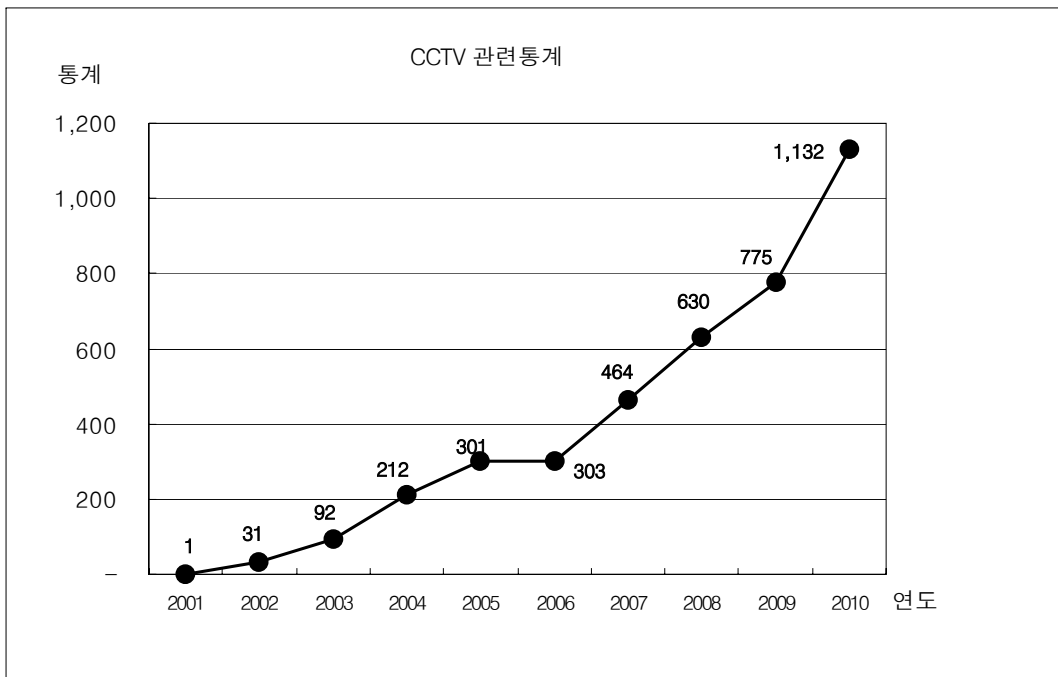
### 2) CCTV 관련 진정 및 상담 통계

- 최근 5년간 관련 진정은 4배, 상담은 5배 정도 증가
-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CCTV 관련 진정·상담이 접수
- 민간 부문의 CCTV 관련 기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CCTV 관련 상담 및 진정 사건 통계 현황

2011.11.8. 기준

구분	진정사건	상담	민원	안내	합계	누계	일일평균
2001	1	-	-	-	1	1	
2002	11	19	1	-	31	32	0.08
2003	30	46	9	7	92	124	0.25
2004	72	92	31	17	212	336	0.58
2005	80	119	74	28	301	637	0.82
2006	60	125	99	19	303	940	0.83
2007	151	168	123	22	464	1,404	1.27
2008	164	290	148	28	630	2,034	1.73
2009	209	386	163	17	775	2,809	2.12
2010	326	520	265	21	1,132	3,941	3.10
2011	118	446	179	13	756	4,697	2.42
합계	1,222	2,211	1,092	172	4,697	-	



### 3) CCTV 관련 상담 중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노동감시 피해 사례

-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로 인한 피해와 함께,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
- 민원 부서에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실제로는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
- 사무실 책상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대화와 행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

#### ■ 국가인권위원회 CCTV 관련 상담·진정 사건 주요 사례

##### <상담사례 1>

1. 회사는 2년 전부터 공장(구두, 가전제품 등 제조)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을 감시하고 있음. 직원이 16명인데 CCTV를 보고 누가 뭘 어쨌다는 등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고 체크하기도 함.
2.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못할 지경임.

##### <상담사례 2>

1. 내담자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음. 직원들에게 어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어제 CCTV 20대정도가 현장에 설치되었음.
2.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인권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됨.

##### <상담사례 3>

1. 본인은 버스회사 기사임.
2. 버스 안에 기사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를 이들에 한 번씩 돌려본 후 인사를 안 했느니, 과속을 했니, 신호위반을 했다는 등 체크를 하고 있음. 이는 설치 목적과 다른 기사들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 <상담사례 4>

1. 한 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2. 머리 위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아파트 소장은 입주자들이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가고, 경비들 보라고 무료로 주는 신문 역시 빼앗아 팔아버림.

##### <상담사례 5>

1. 민원 부서다보니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목적은 내담자로부터 직원 보호라

고 하지만 철저히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2.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 바로 윗분이 불러 늦은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층의 사람이 볼일 보러 잠시 내려와 있으면 왜 갔냐고 묻는 등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있음.



##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박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 규 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박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 규 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토 론 문

---

김 배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 한 영 (6·15남북선언실천)

## 정보인권 관련 토론

김 배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설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진보에 따라 정보사회의 절정으로 다가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의 생산, 유통, 처리, 축적의 증대 및 신속화·다양화의 결과로서 그 존재양식과 가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사회는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제거하여 정부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집중과 정보의 지배로 인한 정보격차 현상, 감시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침해가능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와는 달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전송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터넷에 일단 올려지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퍼져나가 저장·축적되고 재생산되어 돌아올 수 있다.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전통적으로 정부나 기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과 이용, 노출과 조작, 감시 등이 침해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CCTV의 등장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부나 기업에 의한 침해가능성과 함께 개인에 의한 침해양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컴퓨터에

서 나아가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등장 등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이른바 "누리꾼" 등에 의한 인터넷상의 '신상털기'라는 사생활 침해가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정보인권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sup>1)</sup>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신상털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sup>2)</sup>

정부에서는 2011. 3. 29.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망라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지난 9. 30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구 법제 하에서 CCTV 등의 설치근거 부재 또는 미흡을 보완하고 있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잊혀질 권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Ⅱ.), CCTV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보호(Ⅲ.),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정보인권(Ⅳ.)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을 두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일반법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후자의 경우는 적용 영역별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장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

1) "신상털기"란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일르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30대 여교사의 중학교 제자와 성관계 사건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여교사의 개인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하고 개인미니홈피의 사진과 개인적 글까지도 공개하였다.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일반인도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 경남신문, 2011. 6. 19.; 경향신문, 2011. 6. 30. 참조.

2) 한겨레, 2011. 6. 30.; 헤럴드경제, 2011. 6. 29.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sup>3)</sup>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이원적 체제를 일원적으로 개편하여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1)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2) 주요내용

### (1)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 (a)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함.

3) 이항우,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성 비판, 경제와 사회, 2008년 봄호(통권 제77호), 177면.

4) 법제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의 제·개정 이유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b)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a)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b)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4조)**

## **(5)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안 제25조)**

- (a)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b)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안 제33조)**

(7)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a)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 (b)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10) 단체소송의 도입(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11)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62조)

## 2.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1) 구 법제상의 법적근거(법적 근거 미비에서 개정으로 보완)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교통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등을 위한 CCTV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그 법적 근거가 문제 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고 장비의 성능이 향상되어 운영 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sup>

이리하여 2004년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4조의2 등).

---

5)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10. 보도자료 참조.

##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a)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b)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3) 보칙 및 벌칙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②; 제72조(벌칙) 1., 제73조(벌칙) 1.; 제75조(과태료) ① 3., ② 6., 7., ③ 3. 등.

### Ⅲ. CCTV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보호

#### 1. CCTV의 설치·운영 현황과 법적 근거

##### 1) CCTV의 의의와 설치·운영 현황

###### (1) CCTV의 의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일반 TV방송과 구별되는 것이다.<sup>6)</sup>

######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설치·운영 현황

CCTV의 설치유형으로는 공공부문에서는 방범용, 교통흐름조사용,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수배차량 감시용, 밀수 감시용, 산불예방감시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작업장에서의 근무상황 감시용,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자 소비행태자료 수집용, 도난방지용, 시설안전관리용 등이 있다.<sup>7)</sup>

공공부문의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 12만 6천 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범죄예방(34.8%), 환경개선(1.6%), 일반시설관리(34.8%), 교통안전(8.6%), 특수시설(공항, 항만, 지하철 등)관리(18%), 기타(2.2%)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설치현황은 구체적인 자료를 알 수 없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에서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진정·상담 건수가 2001년 1건에서 2010년 1,132건으로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이를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부문의 설치 유형으로는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 근로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무현황 감시용 CCTV, 시설안전관리용 CCTV 등을 들 수 있다.

6) 이철호, CCTV와 인권, 아·태공법연구, 제13집, 2005, 29면.

7) 이철호, 상계논문, 30-31면; 한국전산원,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2004. 12., 1면 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7. 보도자료.

## 2) CCTV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2011. 9. 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CCTV를 비롯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 2. CCTV의 역기능과 개인정보보호

### 1) CCTV의 감시기능과 정보인권의 침해

CCTV의 유용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초상권 침해, 개인에 대한 감시기능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문제를 수반하여 그 설치·운영에 있어서 찬반논쟁이 치열하다.<sup>9)</sup>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예방, 증거방법의 용이한 획득,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적 외 이용의 가능성,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보호,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축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하에 근로자 감시 또는 소비자의 감시 및 소비행태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기도 한다.<sup>10)</sup>

### 2) CCTV로부터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이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올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980년 OECD 가이드라인(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 1995년 EU디렉티브를 참고하였으며, 그 동안 문제점을 법안에서 담고자 하였다.

---

9) 이철호, 전계논문, 35-36면.

10) 홍성욱,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5, 83-87면, 90-92면 참조.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a)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b)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2)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안 제25조)**

- (a)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b)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a)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 (b)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법제의 정비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 정기적인 인권교육, 오·남용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이른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역감시") 등이 원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 IV.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정보인권

### 1. “잊혀질 권리”의 논의 배경

#### 1) 잊고 싶은 정보의 구체적 사례

누구나 살아가면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또는 혼자서도 간직하고 싶지 아니한 기억이나 사실, 정보들이 있다.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은 대부분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거나 상처도 아물게 된다.

그런데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상 정보의 특성(디지털 정보: 한번 인터넷상에 올라 유통되면, 무한히 퍼져나가 저장, 축적되고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언제라도 현재 화될 가능성을 지닌 정보형태) 상 과거의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나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기도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수년전 저지른 절도범죄 기사가 나온다.
- (2) 군대에서 자식의 의문사 기사가 익명으로 실렸는데, 기사를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난다.
- (3) 다단계 불법판매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이름을 검색하면 그 당시 기사가 계속 검색되어 가수활동에 지장이 많다.
- (4) 간통혐의로 기소되었던 연예인인데, 고소인의 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
- (5) 회사가 상품포장에 표기를 잘못하여 소지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기사가 실려 실려 경쟁업체에서 그 기사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고 또 오래 전의 일이므로 삭제하면 좋겠다.<sup>12)</sup>

---

11) 신영진, 공공기관의 CCTV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8. 6.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18면, 홍성욱, 전게서, 107-115면 참조.

12) 이재진, 구분권,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3, 173-174면 참조.

## 2) 디지털의 정보의 특성과 침해되는 망각의 자유

과거 "신문"이라는 종이 위의 기사는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가고 굳이 과거의 기사를 찾아 해매는 노고를 하지 아니하면, 현재로 가져오기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상의 정보는 검색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그에 비하면 너무나 손쉬운 일이 되었고, 일부 신문사에서 과거 기사를 디지털화하면서 "잊혀진 권리"와 관련한 문제도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굳이 과거의 그러한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예로 든 "신상털기"의 경우에도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수집되고 편집을 통하여 재생산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의 소멸 및 사면·복권을 통하여 공문서 상의 기록이 소멸되었고, 특히,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유죄판결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등도 당사자 개인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곤혹스러운 경우에 당사자인 개인은 개인정보나 당해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요구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또는 보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상호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보인권 상호간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잠재해 있다.

## 2.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문제

### 1)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의 충돌

언론보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의를 지니면서 보장되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정보통제나 명예권 등 인격권 등은 개인적 가치를 위한 것으로서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양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법익균형론에 의하여 어느 한쪽을 우선 하거나, 규범조화적 검토를 통하여 양자를 모두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잊고 싶은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그 기사가 사실과 일치할 경우에 그러한 보도

는 사실의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유만으로 삭제하기 어려운 공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대립하는 양 기본권에 대한 헌법상의 고려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보장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는 아직 소개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인권을 실정헌법상 보장하는 방법은 헌법개정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판례를 통한 보장방법으로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등에 근거한 해석을 통하여 “잊혀질 권리”의 헌법상 보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2009년 독일에서는 범죄자들이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올해 초 스페인에서는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된 뉴스기사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올리기로 하였다.<sup>13)</sup>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상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제한적이거나 “잊혀질 권리”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어

정보사회는 국민들의 국가·사회·개인 생활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정부와 기업에의 정보집중과 추적, 정보의 지배를 통한 개인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으로 실질적 자유의 감소와 상실이라는 댓가를 치러야 할 상황 속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주권자 그리고 정보주체로서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의 호가보를

---

13) 한국경제, 2011. 5. 24.

위하여는 공적 정보영역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의 원칙, 비밀의 예외"를, 그리고 사적 정보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보호(비밀)의 원칙, 공개의 예외"를 헌법원칙으로서 확립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을 입법으로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정한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 하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나 기업의 오남용과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는 "역감시"를 통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과거의 상처, 과오,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자유도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정보인권 관련 토론

“국정원부산지부의 6.15부산본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도 한 영 (6·15남북선언실천)

### I. 6.15부산본부 통신제한조치 및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

#### 1. 통신제한조치(감청)

##### 1) 단체

- 6.15부산본부 사무실: 단체메일, 전화, 팩스
- 통일○○○: 우편물, 단체메일, 전화, 팩스
- 부산○○○○: 인터넷 회선

##### 2) 개인

- 도○○(개인메일, 대화녹음)/ 2009년9월18일~2010년7월17일 10개월/ 4회연장
- 장○○(자택 우편물, 개인 메일, 대화녹음) / 2010년3월24~2010년9월23일/ 2회연장
- 최○○(사무실 팩스/ 2010년3월24일~2010년9월23일)/ 2회연장
- 이○○(사무실 인터넷 회선)/ 2009년9월18일~2010년7월17일 10개월. 4회연장

##### 2) 압수수색

- 도○○ 명의 이메일(단체 및 개인) 압수수색(2007년 1월1일~ 2009년 7월10일)
- 장○○ 명의 이메일(단체 및 개인) 압수수색(2008년 1월1일~2009년 11월5일)

- 배○○ 명의 이메일 압수수색(2007년 1월1일~2009년 7월10일)

## II. 통신제한조치에 나타난 문제점

### 1.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사생활과 통신자유가 침해당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기본 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수사당국(국정원부산지부)의 문제점

#### 1) 권한 남용

- 국정원부산지부는 총10개월간 감청을 진행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제6조 제7항에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필요시 2월을 연장할 수 있다. 2월 연장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10개월 감청으로 감청영장 발부 1회에 4회 연장한 것이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않다는 점을 국정원이 악용해 무법적으로 감청을 남용한 것이다.
- 그런데 국정원부산지부가 감청 기간을 4차례 연장할 정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느냐이다.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감청으로 제출된 혐의사실은 없고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몇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컴퓨터에 있는 자료다. 국정원이

10개월 감청과 31개월 동안 자료를 압수수색 한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결과적으로 감청을 4회 연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감청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 무차별 감청

- 국정원부산지부는 통일단체 부산○○○○ 소유의 인터넷 회선을 10개월간 감청했다. 국정원부산지부는 부산○○○○ 이모씨(36세)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 “도○○ 수사 관련하여 6.15부산본부 사무실 인터넷 회선 가입자”로서 감청을 했다고 통지해 왔다. 그런데, 6.15부산본부는 2010년 10월까지 자체의 인터넷 회선을 갖고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모씨 명의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은 명백한 사생활침해다. 인터넷 회선 하나에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산○○○○ 직원과 그 사무실에 들러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무작위 감청을 당했다고 보는게 맞다. 누군가의 인터넷을 감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쇼핑할 뿐 아니라 은행거래도 한다. 따라서 부산○○○○ 간부의 사생활이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연한 사생활침해로 개인의 통신비밀이 무너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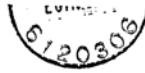
## 3. 통신제한조치 영장발부와 기한 연장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영장발부와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영장발부가 구속영장발부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기한연장 역시 애초 감청영장 발부보다 수월하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율(4%)도 현저하게 낮다. 이는 현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이다.
-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개인이 감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훨씬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크기에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현 정부들어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일반 범죄보다 국가보안법 관련 비율이 매

년 급등(2005년 28%, 2008년 77%, 2009년 85%)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발부 의도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사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Ⅲ. 과제

- 이번 6.15부산본부에 대한 감청에도 나타났듯이 통신제한조치의 기한 연장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임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청의 기한연장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한조치가 있어야 한다. 감청의 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통신제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연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가? 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라면 전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과정의 절차 문제 등 비인권적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137- / 부산 / Tel. 051-7

제 2011-4 호 2011. 9. 28  
수신도 귀하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當院 제 2010-3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2009-13904, 2009-13904-1, 09-13904-2, 2009-13904-3, 2009-13904-4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전기통신의 가입자	도, 이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이메일( @daum.net, @daum.net, @nate.com, @empas.com, @naver.com)</li> <li>o 부산방송 인터넷 회선</li> <li>o 유선전화(051-5), 팩스(051-5)</li> <li>o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녹음, 청취</li> </ul>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전기통신의 감청, 대화녹음 및 청취</li> <li>o 2009.9.18~2010.7.17</li> </ul>

발신 : 국정원 부산지부(부산광역시 해운대 )

수신 : 도 (부산 남구 )

이 우편물은 2811-89-28 제 36888188488호에 의하여 내용중립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산양우체국장

〈광주·전남 지역순회 정보인권 교육 및 토론회 간지〉

## 광주 · 전남 지역순회 정보인권 교육 및 토론회

일정 : 2011년 12월 19일(월) 14:00~17:00

장소 :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4:00 ~ 14:10	[개회 및 토론자 소개] 광주지역사무소장
14:10 ~ 15:10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15:10 ~ 16:00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6:10 ~ 17:00	[정보인권 관련 토론]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승호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백희정 (광주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목 차

## ❖ 발제문

- 정보인권 소개 및 침해사례 발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정보인권 침해사례 시연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토론문

- 정보인권 관련 토론 ..... 61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승호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백희정 (광주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토 론 문

---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승호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백희정 (광주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정보인권 지역순회 교육 및 토론회 토론문

김 해 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두

오늘날은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가공과 처리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변화되어가는 정보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출현은 ‘혁명’<sup>1)</sup>이란 개념을 통해서 규정될 만큼 공동체의 근본 질서에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영역까지 망라하여 종래의 세상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가져왔다. 요컨대,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기인한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와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되었던 19세기, 실질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청으로 등장한 사회적 법치국가(Der soziale Rechtsstaat) 및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이 부각되었던 20세기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혁명으로 인한 협력적 법치국가(Der kooperative Rechtsstaat) 및 광범위한 참여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단지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혹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시대”가 정보혁명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 혹은 ‘권리를 위한 협력’의 시대”로의 변화<sup>3)</sup>라고 하면서 마냥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당면한 과제가 녹녹치 않다. 특히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허위 및

1) 김상배,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2010.

2) 특히 박규환, 세시대, 두전환기, 네가지 기본권의 성격, 연세법학연구, 2005, 219쪽 이하 참조.

3) 박규환,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공법학연구 5-1, 2004, 207쪽.

위험 정보에 대한 규율 및 정보보호와 정보의 자유 간의 갈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본 ‘정보인권 관련 지역순회 교육 및 토론회’에서 필자는 특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보장과 제한, 그리고 국가조직원리로서 정보인권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II. 개념과 유형

### 1. 정보의 개념

현행법상 규정된 “정보”의 개념에 주목하면<sup>4)</sup> 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sup>5)</sup> 혹은 ‘매체에 표현된 일체의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법상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공공정보**”, “**교육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는 될 수 있어도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개념정의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간정보**”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정보**”를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목록정보**”를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일정한 정보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5)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2010, 9-10쪽.

## 2. 인권의 개념

헌행법상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sup>6)</sup>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이를 ‘기본(적 인)권’ 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Rechte als Verfassungsrang)’<sup>7)</sup>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밖의 규범(특히, 법률)에 근거하는 인권적 가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는 바,<sup>8)</sup> 인권은 그 효력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기본권과 입법권에 예속되어 있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권은 정보에 관한 헌법적 차원의 권리(기본권)와 정보에 관한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3. 정보인권을 대신하여 정보기본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법권에 예속되어 있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은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문제의 중심은 헌법적 차원의 정보인권, 즉 정보기본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실정화가 달성된 헌법규범은 헌법현실에서 (생활)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보와 결부된 기본권(정보기본권)’ 또한 그 존재의 인정근거 및 효력근거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 내지는 추상과 이념의 세계에 놓여있는 인간의 권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실무의 세계에 놓여있는 실정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9)</sup>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의를 계속한다.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7) Vgl.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3. Aufl., Frankfurt/M. 1996, S. 258.

8)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효력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 헌법 제6조 참조.

9) 이에 관해서는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 보장의무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2011, 92-93쪽 참조.

#### 4.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정보기본권)의 유형

정보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헌법의 기본권체계와의 불일치 내지는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유형화된 헌법상 기본권에 생활영역으로서의 ‘정보’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정보인권 보장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인호 교수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통제력을 공적 성격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자유와 사적 성격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프라이브시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재판공개의 원칙 및 정보참여권과 같은 기본권을, 후자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보장, 통신비밀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같은 기본권을 상응시키고 있으며,<sup>11)</sup> 이민영 교수는 정보인권을 정보참여권(정보접근권, 정보보안권, 정보영업권), 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정보향유권(표현의 자유, 정보평등권)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명재진 교수는 정보인권을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권리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생활영역에 따른 정보기본권의 파악은 구체적인 경우에 새로운 정보 관련 기본권의 발굴 및 (잠정적) 보호영역<sup>14)</sup> 도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심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능에 주목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본권 또한 대국가적 부작위 요구권인 ‘방어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과, 대국가적 작위 요구권인 ‘급부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구체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10) 명재진/이한태, /이한태,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18-1, 2011, 5쪽.

11)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3,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7쪽.

12) 이민영, 앞의 글, 23쪽.

13) 명재진/이한태, 앞의 글, 3쪽 이하 참조.

14) 관련하여 김해원,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 2009.

### Ⅲ. 보장과 제한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기본권의 무제한적 관철은 헌법규범적으로도, 헌법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정보관련 기본권이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위(작위/부작위)해야 할 의무(보장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보장의무의 준수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부터 도출되는 비례성원리, 즉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이 각각 방어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과 급부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에서 핵심적인 심사기준으로 등장하는 관계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으로서의 형량(*Abwägung*)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sup>15)</sup> 한편 과잉금지원칙 혹은 과소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기본권적 가치의 훼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국가는 해당 정보기본권의 최소치 내지는 본질내용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위 할 의무(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본질내용침해금지’ 여부 또한 심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위결정(*Vorrangentscheidung*)이란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sup>16)</sup>

한편 이상의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제한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OECD에서 마련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sup>17)</sup>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5) 소극적 측면에서의 국가활동규제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원칙’이란 심사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적극적 측면에서의 국가활동규제를 의미하는 ‘과소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영역과 관련된 국가의 목표지향적 과제 - 이러한 과제의 구체적 구현은 전형적인 정치의 소관사항이다. -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됨을 의미하는 바, 이는 강한 자기폐쇄적 구조를 가진 사법절차에 의한 민주적인 정치과정의 대체 내지는 변질을 의미한다(이에 관해서는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헌법학연구 9-3, 2003, 417쪽 참조). 따라서 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금지원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량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훨씬 높은 존중과 고려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해원, 앞의 글(주 9), 99쪽 참조.

16) 보장의무와 보호의무의 구별 및 각각의 경우에 상이한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김해원, 앞의 글(주 9), 103쪽 참조.

17)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 데이터의 수입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데이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져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가 인지하고 동의해야 한다. **데이터 질의 원칙:** 개인 데이터는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목적 특정화의 원칙:**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 시기에 특정되어야 하고, 이후 사용은 수집목적에 제한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은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 변경시에

## IV. 국가조직원리로서 정보인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의 양과 질은 권력의 크기와 비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폭력/권력(Staatsgewalt)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리시키고자 한 권력분립의 정신은 정보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즉 국가기관들 간의 정보분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업무의 편리성 내지는 효율성 혹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관련 정보들을 다른 국가기관들에게 열람/전송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면, 이는 국가관료제와 사회조직에 정치권력의 정보수집활동을 혼합시킴으로써 국민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국가<sup>18)</sup>가 손쉽게 출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개번호제와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여 지문강제채취를 용납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sup>19)</sup>나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호적전산화 작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감시 그리고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삼성SDS같은 사적 기업들이 관계한다는 점<sup>20)</sup>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특정되어야 한다. **사용제한의 원칙:** 개인 데이터는 개시되어서는 안되며, 목적특정화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달리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단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이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전보장의 원칙:** 개인의 데이터는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에 의하여 데이터의 분실 또는 권한없는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개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공개 원칙:** 데이터 관리인의 신분과 거주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의 존재와 성격, 그 사용의 주된 목적을 확인하는 수단은 쉽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참여의 원칙:** 데이터 관리인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데이터 관리인 그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얻을 권리 **책임의 원칙:** 데이터 관리인은 이상의 원칙들을 실행하는 조치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민주법학 3, 197, 251-253쪽.

18) R. Zippelius, Allgemeine Staatslehre, 12. Aufl., 1994, S. 279.

19)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20) 관련하여 <http://www.left21.com/article/9594>, 검색일 2011. 12. 8.

## IV. 결어

기본권민주주의(Grundrechtsdemokratie)<sup>21)</sup>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 추구하는 정보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의미하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sup>22)</sup>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권력이 보유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인관련 정보에 대한 권력의 접근은 더욱 더 통제되고 감시되어야 하는 국가, 즉 정보를 통한 권력통제와 자유보장을 달성하려는 국가가 되어야 마땅하다.<sup>23)</sup>

---

21) Vgl. W. Zeh, Parlamentarismus und Individualismus, in: Grundrechtsdemokratie und Verfassungsgeschichte, K. Waechter(Hrsg.), HW, 2009, S. 78.

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35>, 검색일 2011. 12. 8.

23)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정보인권 또한 가급적 단순한 이념과 추상의 세계에 있는 자연법적 권리가 아니라(혹은 정치적 구호로 기능하는 ‘정보인권’이 아니라), 실정(현)법적 질서에 놓여있는 강력한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적 권리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토론문(특히 목차 II.)에서 필자는 우리 실정법규범이 명시하고 있는 “정보”나 “인권” 등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 누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1. 프라이버시와 평등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조차 안다”는 말이 있다. 이웃과 얼마나 친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옛날 농경사회에 나와 너의 구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신혼 첫날밤, 신랑과 신부가 있는 방 문의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내고 엿보는 풍경 또한 과거의 너-나 없었음의 표현이다. 옛날 유럽의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가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방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 마치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 ‘프라이버시’는 늘 있었다. 오늘날 프라이버시로 생각하는 것을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있었고 그것은 언제나 침해되지 않아야 할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과거에도 프라이버시는 침해되었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다. 동일한 인격의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유럽에서 이런 생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신의 자녀로서 평등하다.” ‘(신 앞에서) 평등한 개인’이라는 관념으로부터 ‘각자의 구원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생겨났다. 종교적 믿음의 옳고 그름을 남이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변형, 즉 청교도적 변형이 생겨났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출 것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제 프라이버시의 주장은 ‘떳떳하지 못함’의 증거가 되었고,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당국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다.

신분제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체주의적 평등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모두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자가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과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 혹은 전혀 신분이 없는 사람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사실상 전자의 ‘민주적’ 변형인) 후자는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나 질적으로 규정된 ‘평등’의 의미에 의하여,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더 평등한’ 사람과 ‘덜 평등한’ 사람이 나누어지면서 발생한다.

현대의 다원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원칙적으로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그 어떤 양적이고 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 2. 기술의 발전과 민주적 통제

근대 국가는 군사적·비군사적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 군사적 기술의 발전은 전쟁을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일로 만들었고, 고가의 무기와 숙련된 병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의 영토 국가만을 유일한 전쟁의 행위자로 만들었다. 또한 활자 매체의 발달은 정보의 기록과 보관, 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국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기록했다. 기술의 발전은 근대 국가의 토대였다. 그리고 오늘날 발전한 기술은 국민 개개인의 생체 정보까지 수집한다.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이전 단계의 기술을 값싸게 만든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이어서 그것을 개인이 쉽게 소유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컴퓨터를 개인이 어렵지 않게 소유할 수 있다. 무기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전쟁의 국가 독점이 약해지고 있고,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법적 권한이 아니라) 능력도 탈국가독점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역시 탈국가독점화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정보를 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도, 자국정

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정부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의 국가 독점은 동시에 전쟁의 민주적 통제를 가져왔다. 무기 기술의 발전은 무기를 한 편으로는 비싼 것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적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대량의 인명 피해를 낳는 무기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겠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기술의 발전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그 사용의 권한이 국가의 수중에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정보 수집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수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와 수집 방법, 그것의 활용 목적과 방식,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열람 권한의 범위, 그리고 그 정보의 보관 기간 등을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개인은, 비록 자신의 정보가 국가에 의해 수집되지만, 여전히 익명으로 남을 수 있고, 즉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의 권력은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사생활의 익명화와 권력의 투명화]. 그러나 이런 민주적 통제가 국가 운영의 그저 기술적인 부분의 하나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는 이른바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을 내장한 기계와 같은 것이 된다. 국가는 점점 익명화하고,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은 투명해진다[권력의 익명화와 사생활의 투명화].

오늘날 정보 수집 기술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국가 권력의 익명화에 안심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사생활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점차 잊으며, 그 결과, 외국 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마저 개인 정보의 수집과 기록에 나서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제할 정치적 힘도 잃고 있다는 것이다.

### 3. 개인주의 없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계

오늘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력은 국가의 이름으로만 행사되지 않는다. 합법적 형태로 국가와 유관하게, 그리고 불법적 형태로 국가와 무관하게 이 권력은 도처

에서 시도 때도 없이 행사된다. 이 권력의 행사에 반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 권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행사되기도 한다.

이 권력은 도처에 있다. 다른 권력들과 쉽게 접속하면서, 익명으로, 단지 기술적으로만 존재하면서 도처에 있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 권력은 그래서 쉽게 감시 권력으로 변한다. (예컨대,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의 조회를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권력, (인터넷 공간의 감시와 개인용 컴퓨터의 해킹을 통해) 심지어 개인의 생각마저 감시하는 권력으로 변한다.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자신의 취향대로 설정한다. 이는 컴퓨터 속의 공간을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공간의 프라이버시].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에 자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저장해둔다. 때로는 여러 폴더들 속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두기도 하고, 비밀번호로 묶어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방비 상태로 두기도 한다. 뽕뽕 감추어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해서, 그 정보들이 사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스스로 공개하기 전까지 그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이다[정보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런 사적인 정보들이 타인에 의해 고의로 혹은 실수로 공개되었을 때,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항의할 때, 가해자나 제3자가 강제로 공개된 개인 정보의 내용을 따져 프라이버시 침해의 당부당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마저 빼앗기에 된다[결정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침해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공개된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그와 대비되는,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과도한) 무관심이다. 때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오히려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의를 무력화한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통의’ 이익의 침해로 보지 못하고, 그저 ‘특수한’ 개인의 이익 감소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그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환원해버린다. 예컨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사상이 불온하다거나, 신앙심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식이다. ‘침해되어도 좋은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소년의 인권이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는 일종의 ‘침해되어도 좋은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섞여 있다.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나빠서는 아니지만, 아직 또는 영구히 부족하기 때문에) ‘덜 평등’하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의 인권이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념이 숨어 있다. 그들 역시 우리보다 (이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덜 평등’하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제대로 감시되고 통제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개개인을 동등한 법적 권리의 보유자로 인정하는 개인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정보)인권의 보호는 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사안 사안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는 결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존중될 수 없다. 타인을 나와 동일한 권리와 인격,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지 못할 때,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곧 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의 (침해되어도 좋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도 있게 된다.

(정보)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문제이다. 사적인 자유와 관련해 우리는 결코 ‘보호되어 마땅한 자유’와 ‘침해되어도 좋은 자유’를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된다. 개인의 사적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거기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사회의 전체화는 시작되고, 결국에는 (억압하는 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자유가 억압된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콜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나치가 사민주의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나치가 나를 체포했을 때,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오늘날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은 점점 투명해지고, 비가시화하고, 익명화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성숙, 즉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우리는 제대로 맞설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보호

임 승 호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

올해 들어 현대캐피탈, sk텔레콤, 온라인게임사 등 굵직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는 각종 스팸메일의 홍수에서 허덕이고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 못지않게 민간부문에서도 왕성하게 수집 처리되고 있고, 이들 정보가 불법적으로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다. 민간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보호조치 미흡, 이같은 개인정보 침입위험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수집, 분류, 저장, 검색의 편의는 물론 유통속도마저 엄청나 개인의 사생활은 발가벗은 몸뚱이신세로 전락되어버렸다. 개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외부의 눈앞에 노출된 또 다른 배경은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지향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각종 정보의 장악 움직임, 대중저널리즘과 뉴미디어의 급속한 확장, 그리고 기업의 판촉을 위한 개인관련 정보수집의 필요성 증가 등 때문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19세기 황색저널리즘의 만연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무자비하게 유린되는 사례가 늘어나 종전의 명예훼손 법리로 다루어서는 구제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황색저널리즘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새로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적 사항을 폭로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런과 브랜다이스가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연방 대법원 판례로 수용되어 왔다가,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

의 한 영역으로 보호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의 원리에 기한 인격권의 하나로서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년 주간지 ‘토요신문’ 사건과 1998년 유방성형수술과 관련 수술자 신분을 노출시킨 MBC tv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 보호, 제21조4항 언론자유에 한계 등을 들었다.

프라이버시권은 처음부터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가 현재화하는 속성 때문에 ‘소극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국가 지향과 기업의 새로운 시장획득 동기는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전송망 보급은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가공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한편, 순식간에 대외적 전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도 포괄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함부로 자신의 사생활이 공표되지 않을 자유에서 더 나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취득, 보유, 이용, 제공, 공개 등 모든 측면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 및 열람청구권과 자기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삭제요구권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는 2011년 3월에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법으로서 정보사회 개인정보처리원칙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4조), 5)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안 제25조),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정

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단체소송의 도입(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등은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의 허점을 상당수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보완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자기 정보 컨트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는 담보로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 다양한 생활편익을 향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할 주민등록통합전산화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의 NEIS, 소방방재청의 위치추적시스템 등은 프라이버시보호와 국민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쟁점들이다.

이를위해,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개인정보에 관한 제반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의 원칙’을 행정현장이나 정보관리 실천현장에서 강도높게 담보해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정부와 관료의 행정편의주의와 비밀주의의 방패로 오용되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잘 알고 잘 누리고 있는가?

백 희 정 (광주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와 통신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정보의 수집, 분류, 저장, 검색의 편의는 물론 유통속도마저 엄청나 개인의 사생활은 이러한 기술발전 앞에 발가벗은 몸뚱이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다. 개인의 사생활이 이처럼 수많은 외부의 눈앞에 노출되게 된 것은 이러한 기술발전 이외에 현대국가의 복기 국가적 지향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각종 정보의 장악 움직임, 대중 저널리즘의 등장 및 경쟁 격화, 그리고 기업의 판촉을 위한 개인 관련 정보 수집의 필요성 증대 및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증가 등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최근 인권위의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와 방통위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꼼꼼히 살피지 않기도 하고 설마 나의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언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비로서 위험성을 느낀다.

정보인권 교육 자료를 읽고 나는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의식을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1. 정보인권의 유형별 국제규약과 법률에는 정보인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개인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살고 있는가?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며 살고 있다. 공공기관, 은행, cms 이용, 사회 이슈에 동참하기 위한 서명운동,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 등 끊임없이 자신임을 증명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해당되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통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은 <보이지 않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며 이는 개인들로 하여금 표현이 자유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chilling effect), 즉 자기 검열이다.
- mb정부의 광우병 괴담,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개인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본 전 국민에 대한 위축 효과, 수사력을 동원한 체포 가능성 ‘업포’와 ‘금지글’에 대한 암시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활발하게 동원되는 검열 방식이다.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네티즌이 504명, 총 선거사범 중 35.2%에 달한다.(2008년 검찰 조사 발표) 놀라운 점은 전체 입건 건수 가운데 93.8%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이나 일반인의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렇게 경찰서에 불려 다닌 네티즌이 1천여 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이다.

- 이명박 정부의 촛불 네티즌에 대한 온라인 추적과 형사적 처벌, 적극적으로 방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통제적 국가 전략을 실감나게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명예훼손, 네티즌에 대한 형사적 처벌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 권력의 문제는 전통적인 억압적 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 하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위축 효과는 아직까지 인권 침해로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 검열은 인권 침해로 인정되지만 그것은 주로 사전적인 규제나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서이다. 범죄 예방이나 테러 방지와 같은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에 비해 감시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막연한 사생활 보호론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억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에 대한 저항도 쉽지 않다.

**2. CCTV 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과 아동폭력이 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처 방안은 CCTV 설치가 대안이었다. 정보화는 표현의 자유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화의 방향과 방법,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 CCTV 설치 찬성론자들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의 활용’이라는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한다. CCTV와 같은 과학의 기기(利器)를 활용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CCTV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CCTV 설치 반대론자들은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CCTV 설치 지역의 범죄율은 일시적으로는 감소하나 풍선 효과로 인해 다른 인근 지역의 범죄 발생율이 늘어나므로 결국 사회 전체의 범죄율 감소는 가져오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CCTV의 설치는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뉴스 보도에서 교통사고 사망 장면을 편집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등 다양한 CCTV 화면을 방송용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CCTV 화면은 방송을 선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해온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방송의 소재거리로만 그칠 수 없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 민간기관이나 개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 현재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특히 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커져 왔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나 공중목욕탕 CCTV를 규제하는 법률들이 있지만 그 설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치된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법률로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는 일부 영상의 경우처럼 오락적으로 마구 소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3.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충돌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 나도 모르게 TV에 나왔다면-초상, 음성, 성명도 언론에서 보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 대개 자신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며 길거리에서 한 여대생을 촬영한 사건, 벚꽃구경을 나온 직장인을 촬영한 사건, 무더운 여름날 음료수 컵을 들고 길을 걷는 젊은 여성 3인을 촬영한 사건 등

## ◎ 참고 : 언론중재위가 처리한 조정사건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국민일보, 2010.1.16):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담벼락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백만원 배상 합의 성립.

<소비패턴 바꾸는 5만원권>(동아일보, 2010.9.20):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백화점에서 쇼핑중이었는데 사전 동의도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이 침해되었음. 50만원 배상 합의 성립.

<공포의 통과의례>(○○방송, 1998.1.13. 서울고법 판결):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방송, 2009.5.19. 서울남부지법 판결):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취재에 동의하여 보도됐으나 8개월 후 2차례에 걸쳐 교양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일부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됐다. 이에 대해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5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년 뒤 뉴스 프로그램에 10초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이 또 방송되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5백만원 지급 판결.

###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보도의 문제

한국여성민우회는 “뉴스를 통해 성폭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 지양해야 할 태도 즉 앞서 지적한 선정적 화면 구성, 자세한 범죄 상황 묘사와 더불어 성폭력의 원인과 예방을 모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보도행태를 보인 방송사를 지적하며 ” 000 뉴스데

스크는 성폭력 관련 보도 건수도 가장 많았다”며 “이는 000가 성범죄 관련 쪽지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자주 등장시켜 시청률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기에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프라이버시권이 왜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우리 사회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조직문화, 특히 사회의 질서를 시민권, 사적 영역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약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프라이버시가 권리로 주장되는 것이 낯설은 이유는 이런 공/사 영역의 이분법적 사고안에서 양보되어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로 폄하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5. 여전히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약자이다.

-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성’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는 없다. ‘리스트’가 해결의 실마리를 던진 ‘성상납’이나 성폭력 사건들은 은밀한 것이기에 앞서, 사라져야 할 ‘범죄’다. 칼로 무 베듯 공/사 영역을 나누는 담론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뿌리 깊은 접근이다. ‘프라이버시권’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 1998년 ‘O양 비디오’나 2000년 ‘B양 비디오’ ‘A양 동영상’ 사건과 위에서 이야기한 성폭력피해자 언론보도에 대한 2차 피해에서도 볼 수있다.
- 언론의 집단 성폭행 과정을 ‘(여자를) 업고 들어간 남자는 안에서 안 나오고 한 명씩 번갈아 들어가’라는 종업원의 인터뷰가 여과없이 방송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인터뷰내용을 가감 없이 들려주어 오히려

려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 6. 정보인권을 위한 대안

### •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

-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양적인 확산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보화 강국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 주도, 국가 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질적 향상 된 정보화가 되긴 어렵다. 많은 여성들과 학생, 노인층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사용이 아직 자유스럽지 못하다. 특히, 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한 숙제와 참여유도가 많은데 실제로 각 가정의 pc 유무, 사용가능에 대한 조사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정보화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대에 오히려 컴퓨터가 없다는 것과 사용을 자유자재로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치부해 또 한번의 정보접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 정보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보인권 운동에 있어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정보인권에 대한 정서적인 감수성을 심어주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작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의 범죄가 얼마나 되는 지 실제로 일반 개인이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를 통해 보면 사이버상의 범죄는 사회 악으로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해 동안 실제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가 2천건 미만인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심의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 먼저 정

보화 역기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규제라는 쪽으로만 기울게 된 것이다.

- 내용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의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인권에 관한 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정보인권의 개념을 온라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오프라인상의 인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자.



---

## 지역순회 정보인권 교육 및 토론회

---

| 인 쇄 | 2011년 12월

| 발 행 | 2011년 12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9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40-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